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울산지방검찰청
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주민철

전화 052-228-4466

보 도 자 료

2024. 2. 22.(목)

제 목 상습 음주운전 사범 직접 구속 및 차량 압수 등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(부장검사 손은영)는 음주·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수사 중 재차 음주·무면허 운전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직접 구속 하고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를 압수한 후 2024. 2. 19.(월) 기소하였음
- 울산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「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·경 합동 대책」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,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 후 몰수 구형하였고, 그 결과 3대 모두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음
- 앞으로도 울산지방검찰청은 상습·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

I 피고인

- A○○(44세, 무직)

※ 음주·무면허운전 전력 11회(실형 6회), 별건 음주·무면허운전으로 1심 재판 중

II

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 A○○

- '14. 8. 11.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징역 10월이 확정된 후 10년 내인 '23. 12. 20. 울산 ○구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.101%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,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
III

수사 경과

● '24. 1. 18. 불구속 송치(울산○○경찰서)

- ※ 별건 동종사건('23. 9. 8.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.079%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)은 '23. 12. 26. 불구속기소

● '24. 1. 31.~2. 6. 울산지검, 구속영장 청구 → 발부, 집행

● '24. 2. 13.~15. 울산지검,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압수영장 청구 → 발부, 집행

● '24. 2. 19. 구속기소, 향후 압수한 승용차 몰수 구형 예정

IV

수사 의의

①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직접 구속하여 엄단

- 피고인이 음주·무면허 범행으로 검찰 수사 중 재차 음주·무면허 범행을 한 점, 피고인이 음주·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,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, 사안 가법지 않고 재범 우려 매우 높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였음

② 승용차 압수 및 몰수를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

- 상습 음주·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범행 도구인 차량을 몰수한 다수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,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의 재범 우려 매우 높아 범행 도구인 승용차를 몰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직접 압수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

-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「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·경 합동 대책」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,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 후 몰수 구형하였고, 그 결과 3대 모두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음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	음주전과
1	BOO	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(상해) 야기	11회,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
2	COO	음주 및 무면허운전	3회, 음주운전 재판 중 범행
3	DOO	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(사망) 야기 후 도주	초범

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·몰수 기준(23. 7. 검·경 합동 시행)

- ▶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(死傷者 다수, 사고 후 도주,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,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)
- ▶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
- ▶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
- ▶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·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V

향후 계획

-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차량의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☑